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인상 공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제도 적용대상 공사 현장에서 건설근로자가 근로할 때 사업주가 납부하는 1일 퇴직공제부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이 인상 결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1일 퇴직공제부금을 2026년 4월 1일부터 8,700원으로 인상한다.
2. 퇴직공제부금 인상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공사(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 부터 적용한다.

2026년 3월 30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